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206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9.0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25

www.ihg.com
amea.development@ihg.com

voco™

정 보 공 개 서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65 6395 616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65 6395 6158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 COVID-19 전염병의 전 세계 발발에 대응하여 정부 당국은 운영 제한, 그룹 모임 제한, 강제 폐쇄 및 숙박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구 사항 및 조건을 부과했으며 모두 전 세계, 지역, 국가 및 로컬에 따라 다르며 정보공개서 발행일 현재 계속 진전하고 있습니다. 발병 및 귀하의 대응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정부 기관의 명령을 조사하고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사의 책임입니다.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는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예를 들어 교육, 회의 및 컨퍼런스와 같은 대면 모임의 일시 중단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모임은 원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Offering Circular)의 문구를 간단히 하기 위해 아래의 용어들은 아래에서 부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로서 본 정보공개서에서 정의하지 않는 것은 가맹계약서(Franchise Agreement)에서 명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본 정보공개서에서는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를 "IHGAP"라 하고, 가맹점사업자를 "귀하"라 합니다. 귀하가 기업, 조합, 기타 법인인 경우, "귀하"에는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포함됩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voco™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3 December 1999	-	Rajit S	+65 6395 6166	+65 6395 6158
	법인등록번호	199907619H	**사업자등록번호**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수석 부사장 겸 전무이사, 동아시아퍼시픽 ("EAPAC")	Rajit S	voco™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65 6395 6166	+65 6395 615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부사장, 사업 평판 및 책임, 유럽, 중동아시아, 아프리카("EMEAA") (동부)	Janice Gan Kha Hwe	voco™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65 6395 6166	+65 6395 615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인사책임자, EAPAC	Mustafa Can Denlisoz	voco™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65 6395 6166	+65 6395 615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부사장, 재무, EAPAC	Alexandre Joseph Louis Personeni	voco™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65 6395 6166	+65 6395 615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Vivek Bhalla	voco™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전무이사, 동남아시아 및 한국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65 6395 6166	+65 6395 615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Parent Company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PLC	voco™	Broadwater Park, Denham, Buckinghamshire, UB9 5HR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N/A	+44 1895 512 977	+44 1895 512 101
	법인등록번호	(UK) 5134420	사업자등록번호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본부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했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M&A 내용	회사명	영업표지	M&A 날짜	주소	대표 성명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voco™ 가맹사업") 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voco™	-
상 호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확정됨	목적은 호텔을 운영하거나 가맹본부가 호텔 운영을 승인한 운영회사(management company)를 고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명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서비스표)	VOCO AN IHG HOTEL	등록번호: 40-1487382-0000 I. 9. (상표 목록) 참조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SGD, 부가세 별도)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725,054,926	82,585,813	642,469,113	149,427,085	70,842,125	62,540,124
2022	747,906,274	78,439,731	669,466,543	183,332,771	38,860,168	26,278,915
2023	807,752,976	62,637,484	745,115,492	249,751,009	99,390,629	77,006,610

* 첨부: (1) 당사의 2021년, 2022년 및 2023년의 각 12월 31일 대차대조표와 (2) 당사의 2021년, 2022년 및 2023년의 각 12월 31일 손익계산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바로 전 3년 동안 IHGAP의 국제 가맹 프로그램 관련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Rajit S	수석 부사장 겸 전무이사, EAPAC	2024. 3.1. – 현재	수석 부사장 겸 전무이사, EAPAC	IHGAP의 이사
			2020. 2. 1. – 2024.2.29	대표이사, 동남아시아 및 한국	
			2017. 2. 1. – 2020. 1. 31.	총개발책임자 EMEAA 총개발책임자 AMEA	
	Janice Gan Kha Hwe	부사장, 사업 평판 및 책임, EMEAA (동부)	2018 – 현재	부사장, 사업 평판 및 책임, EMEAA (동부)	IHGAP의 이사
	Alexandre Joseph Louis Personeni	부사장, 재무, EAPAC	2024.4.1 – 현재	부사장, 재무, EAPAC	IHGAP의 이사
			2022.1.1 – 2024.3.31	부사장, 재무, SEAK, 일본, 오스트랄라시아 및 태평양	
			2021.10.8 – 2021.12.31	재무 책임자, SEAK	
	Mustafa Can Denlisoz	인사책임자, EAPAC	2024.4.1.-현재	인사책임자, EAPAC	IHGAP의 이사
			2022.2.14 – 2024.3.31	인사책임자, 동남아시아 및 한국	
	Vivek Bhalla	전무이사, 동남아시아 및 한국	2024. 4. 1. – 현재	전무이사, 동남아시아 및 한국	IHGAP의 이사
			2020. 1. 1. – 2024.3.31	부사장, 운영담당, 동남아시아 및 한국	
			2018. 1. 1. – 2018. 12. 31.	서남 아시아 대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IHGAP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5	0	14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IHGAP 및 IHGAP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IHGAP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업 유형	기간	사업내용
모회사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PLC	가맹사업	2003 ~ 현재	호텔 가맹본부 및 관련 지원

9.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에 따라 “voco”의 상호 아래 브랜드 표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호텔을 개발하고 운영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호텔 운영에 사용할 추가적인 상표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상표를 빼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IHGAP이 귀하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표지	지식재산권 내역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인 (출원인)	만료일
상표 (35, 43)	VOCO AN IHG HOTEL	voco™	2019. 6. 10.	40-1487382-0000	Sixth Continents Limited	2029. 6. 10.
상표 (35, 43)	VOCO AN IHG HOTEL	VOCO AN IHG HOTEL	2019.06.10	40-1487381-0000	Six Continents Limited (Denham)	2029. 6. 10.
상표 (35, 43)	VOCO	VOCO	2024.02.16 (출원일)	40-2024-0029571	Six Continents Limited (Denham)	

귀하가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가맹본부의 상표(또는 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voco™ 가맹사업의 현황

1. 가맹본부가 voco™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은 2018년 6월 12일에 voco™ 브랜드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Six Continents Limited ("SCL")는 voco™ 호텔의 건설, 개장 및 운영을 위한 독점 시스템과 함께 일반 대중에게 voco™ 호텔과 관련된 독특한 비즈니스 형식을 제공하는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voco™ 호텔의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 마크 및 상표 조합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SCL은 가맹본부인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IHG Hotels Limited 및 IHG Systems Pty. Ltd.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룹 내 다양한 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위 회사들이 2018년부터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미주 지역을 기준으로 voco™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oco™ 호텔 프랜차이즈는 2020년 3월부터 미주 지역에서 제공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유럽, 영국, 중동, 호주, 항저우 및 뉴욕에 영업중인 19개의 voco™ 호텔이 있으며 유럽, 중동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 (동남아시아 및 한국 포함), 미국 및 중국 본토에 추가 29개의 voco™ 호텔이 오픈 예정입니다.

voco™ 호텔은 군중에서 눈에 띄는 호텔을 찾는 고급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전형적인 voco™ 호텔은 100-200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호텔의 객실 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voco™는 독립호텔과 같이 형식에 매어 있지 않으며 이의 매력을 글로벌하고 존경받는 브랜드의 품질과 보장성을 결합한 새로운 고급호텔 브랜드입니다. voco™ 브랜드를 통해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이름으로 독특한 호텔의 신선함과 함께 고급스러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느긋한 분위, 신뢰할 수 있지만 특별한. 각 voco™에는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신선한 터치를 특징으로 하는 고유한 캐릭터가 있으며 모두 지속 가능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2. voco™ 영업표지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voco™	Rajit S	2021 ~ Present	230 Victoria Street, #13-00 Bugis Junction, Singapore 188024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voco™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숙박	호텔 및 숙박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voco™ 가맹호텔 및 직영호텔의 총 수 지역별 기재

국내: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1	1	0	1	1	0
서울	0	0	0	1	1	0	1	1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해외: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voco™ 가맹호텔 수

국내: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1	0	0	0	1
2023	1	0	0	0	0	1

해외: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6. voco™ 가맹호텔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호텔 현황

국내:

	상호	브랜드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호텔 및 리조트 수/직영점 수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인터컨티넨탈® 호텔 & 리조트	20190514	호텔	1/0	1/0	1/0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voco™	20212062	호텔	0/0	1/0	1/0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홀리데이 인® & 홀리데이 인 리조트	20230108	호텔	3/0	3/0	3/0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홀리데이 인	20230110	호텔	1/0	1/0	1/0

	(Asia Pacific) Pte. Ltd.	익스프레스®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크라운플라자	20230107	호텔	0/0	0/0	0/0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Staybridge Suites	20230109	호텔	0/0	0/0	0/0

해외:

구분	상호	브랜드명	지역	업종	가맹호텔 및 리조트 수/ 직영점 수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가맹본부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e Ltd.	InterContinental-	베트남	호텔	1/0	1/0	0/0
			필리핀		0/0	0/0	0/0
		Holiday Inn	베트남		0/0	1/0	0/0
			필리핀		0/0	1/0	1/0
		Holiday Inn Express	필리핀		1/0	1/0	1/0
			태국		0/0	0/0	0/0
		Crowne Plaza	태국		1/0	1/0	0/0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Sustainable Luxury Management (Thailand) Limited	Holiday Inn	태국	호텔	0/0	0/0	3/0
		Holiday Inn Express	태국		1/0	1/0	1/0
		Crowne Plaza	태국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국내: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는 5 곳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역	2023년 말 현재 가맹점 수	2023년 말 기준 평균매출						비고
		연평균 매출	면적 3.3m2 당	최대 매출	면적 3.3m2 당	최소 매출	면적 3.3m2 당	
합계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곳 미만
서울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곳 미만
부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광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울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강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충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경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외:

지역	2023년 말 현재 가맹점 수	2023년 말 기준 평균매출						비고
		연평균 매출	면적 3.3m2 당	최대 매출	면적 3.3m2 당	최소 매출	면적 3.3m2 당	
합계	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1	617

해외: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지역	상호/ 명칭	주소		
대한민국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Asia Pacific) Ptd. Ltd., 대한민국 지점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ASEM 타워 37층 #3701, 06164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Rajit S	+82 2 6001 3891	--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 권한	가맹계약 체결 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1. 가맹금 예치

IHGAP은 가맹 수수료를 예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HGAP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본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IHGAP 및 I.6에 기재된 당사의 임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본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IHGAP 및 I.6에 기재된 당사의 임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본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IHGAP 및 I.6에 기재된 당사의 임원은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voco™ 호텔의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voco™ 프랜차이즈 호텔의 운영을 시작하려면 IHGAP에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수수료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령인	예치 대상 요부	참고
신청 수수료	가맹본부	아님	
보증금	-	-	
기타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계열사 또는 기타 회사	아님	

1) 가맹사업 운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가맹점사업자의 초기 비용

최초 투자금 추정액				
구분	**금액**	**지급 대상**	**지급 기한**	**지급방법**
가맹 신청 수수료	최대 $25,000	가맹본부	(i)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ii) 최초 가맹호텔이 운영을 시작한 날 중 먼저인 날	일시불

2)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4) 1)항과 2)항 외에,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일정한 지출 범주의 예상 비용에 관한 정보이며, 저희는 voco™ 프랜차이즈 호텔을 개업하는 데 있어서 귀하의 비용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귀하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실제로 지불할 비용은 다음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운영 기술 및 경험, 공급 가용성, 지역 및 현지 경제 조건, 임금율, 규정, 경쟁. 또한 저희는 그 밖의 지출 범주를 추정 금액 없이 열거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지출을 예상해야 하며 저희는 추정 금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자체적으로 귀하의 시장에서 상대적인 비용 분석을 하고 이러한 추정치를 귀하의 영업 및 법률 고문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USD, 부가세별도)

구분	추정 금액	면적 3.3㎡당 금액 (주5)	지급대상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토지(다양함)	-		토지 임대인 또는 매도인	청구된 때	IHGAP가 아는 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토목 및 건축 계획을 포함한 건물 건축	객실당 $267,000 - $349,000 (혹은 총 250개 객실 기준	$14,710.74 - $19,228.65	건축 용역 제공자	청구된 때		주 1

	$66,750,000–$87,250,000)				기재된 지출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IHGAP는 직접 또는 간접 금융을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구, 고정 집기, 장비(FF&E)	객실당 $35,000 - $41,000 (혹은 총 250개 객실 기준 $8,750,000-$10,250,000)	$1,928.37 - $2,258.95	판매자	청구된 때		
옥외 간판(Primary Identification Sign) (설치, 운송, 기초, 배선 포함)	$165,000 – $420,000	$36.36 -$92.56	판매자 및 용역 제공자	청구된 때		
기술 서비스 수수료	$190,000-$230,000	$41.87 -$50.69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협의에 따름		서비스 제공 기간, 장소, 및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시설 및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PMS 장비, 소프트웨어 설치 및 훈련 (2) IHG Concerto™ 장비, 설치 및 훈련	$53,800	$11.86	용역 제공자	발생시		주 2
고객 인터넷 접속 - 하드웨어	객실당 $600 – $1,000 혹은 총 250개 객실 기준 $150,000 – $250,000	$33-$55	판매자 및 용역 제공자	발생시		주 2
신규 호텔 개장 훈련 자료	최대 $5,000	$1.1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청구된 때		이 항목들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항목이나, 가맹본부가 실현하는 이득은 없습니다. 훈련 등은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 IT, 홍보 및 신규 호텔 개장 팀이 제공하는 훈련에 대한 개장 전 서비스 수수료 (자료 및 선적, 트레이너의 출장 및 숙박)	$8,000 – $40,000	$1.76 - $8.8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협의에 따름		
호텔 사진	$80,000 – $120,000	$17.63 - $26.44	용역 제공자	청구된 때		주3
합계 (주 4)	$76,151,800 - $98,618,800*					250개 객실 호텔 기준 (15,000-25,000㎡)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해당 사항 없음.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호텔 부지를 선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부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계열사는 부지의 일반적인 위치, 크기, 가시성, 접근성, 고객 창출 요소와의 관계, 경쟁 환경을 검토할 것입니다.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가 해당 부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i)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ii)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호텔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또는 운영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iii) 가맹계약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며, (iv)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와 열람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v)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열사도 마찬가지): (a)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b) 호텔, 해당 시스템 또는 가맹본부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 (c) 당사 또는 계열사와의 중대한 민사 소송 당사자였던 사실, (d) 호텔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경쟁업체라는 사실.
가맹사업자의 종업원	특별한 자격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호텔 직원이 지정된 시간 내에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교육을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맹본부가 만족할 정도로 모든 교육이 완료되어야 하며,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총지배인, 마케팅 이사 및 영업이사의 선택을 제외하고 모든 고용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내립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고용 방침이나 의사 결정을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도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비용을,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1]

(USD, 부가세별도)

구분	금액	지급기한	지급 대상	반환조건	비고
로열티 및 프랜차이즈 관련 수수료					
라이선스 수수료	총 객실 수입(GRR)의 5-7%	매월, 다음 달 15일에 지불	주1	주1	주 1
감사/이자	부족액, 이자, IHG의 비용 및 경비 $2,500 - $3,000 (감사 비용은 시스템 차원에서 증액될 수 있음).	IHGAP의 통지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주1	주1	주 2
고객 만족 규정 준수 또는 브랜드 표준 평가를 위한 품질 방문 평가 불합격, 의무 불이행 또는 해지 상태	첫 방문: 숙박 및 식사 비용 환급 호텔이 첫 번째 품질 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후속 재방문: 숙박 및 식사 비용 환급 및 1회 방문 당 $2,500	후속 검사 및/또는 특별 검사 전에	주1	주1	
호텔 성과 분석, 호텔 방문을 포함해 IHG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조사,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라 호텔 매출, 수입, 운영 및/또는 브랜드 전달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기회에 관한 논의를 위한 성과 지원 수수료	연 2회 방문으로 방문당 최대 $15,000	IHGAP에 지급	주1	주1	
마케팅 및 예약 분담금	총 GRR의 3%	매월, 다음 달 15일	주1	주1	주 3
로열티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마케팅 분담금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의 적격 총 폴리오 수입(Folio Revenue)의 4.55%	매월, 다음 달 15일에 지불	주1	주1	주 4
IHG 커미션 서비스(ICS)(여행사	총 객실 요금의 10 % (최소) 수수료.	매월	주1	주1	주 5

수수료)	예약당 연결 수수료 최대 $1.35				
제3자 판매 연결 수수료(Distribution Connection Fees)	GDS 수수료: 예약당 $6.40	매월	주1	주1	
단체 & 회의 수수료	IHG MeetingBroker를 통해 호텔로 송부된 소비 또는 추정/합의된 수입의 4% 예약 당 수수료 한도는 $30,000임.	매월	주1	주1	
IHG® 리워드 측정 기준	객실 300개 미만 호텔의 불합격한 기준 1개당 할당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분기 불합격 = 시정 (위약금 없음) 2사분기 불합격 = $1,000 부과 3사분기 불합격 = $2,000 부과 4사분기 불합격 = $3,000 부과 그 이후에는 분기당 $3,000 상한	분기별 할당금을 청구서에 표시함	주1	주1	주 6
호텔 관리 시스템(PMS) 수수료					
고객 인터넷 접속 - 대역폭 서비스 가입	$1,000 - $5,000 가격은 추정치이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가맹본부 또는 계열사	주1	
고객 인터넷 접속 -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고객 지원	객실당 $4.00 회의/컨퍼런스룸당 $25.00, 총 회의 공간 2000 평방피트당 $20.00 가산, 최대 $500.00 (회의실 지원 수수료는 총 회의 공간이 2,000 평방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매월	가맹본부 또는 계열사	주1	
전제 기반 소프트웨어 유지 (연간비용)	Opera 200개 객실: $5,000 250개 객실: $6,200 300개 객실: $7,300	매년	제3자 공급업체	주1	주7
시스템 지원 및 기타 수수료					
기술 서비스 수수료	GRR의 1%	매월	주1	주1	주 8
고객 관계(Guest	호텔의 품질 및 서비스	요청시	주1	주1	주 9

Relations) 수수료	담당자는 'One Contact Resolution' 프로세스에서 Guest Relations으로 처리합니다. 호텔에는 1박 객실요금과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투숙객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구입 요구 품목(요구 또는 권장 품목)의 구입을 위하여 지급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1)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및 만료나 해지 후 1년 동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총객실수익(Gross Rooms Revenue) 또는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가 정확히 산정하여 인증한 연례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나중에 작성된 감사증명서는 만료 또는 해지시에 종료하는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항시 합리적인 시간에 소재지에 관계없이(또는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 위치한) 모든 해당 기록을 요청, 수령, 조사 및 감사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투숙객 설문조사 추적시스템(Guest Survey Tracking System) 보고서를 포함함)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나 감사 결과 지급해야 할 금액에 과소지급액이 발견되고 해당 금액이 초과지급액으로 상계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조사나 감사결과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과소지급액과 이자를 가맹본부에 즉시 지급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감사 결과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조사 및 감사 비용 전액(조사 또는 감사 담당 직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급여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비용이 과소지급액을 하회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조사·감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조사나 감사 결과 초과지급액이 발견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조사나 감사 결과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가맹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초과금액 및 이자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양도 및 기타 해지 후 비용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음. 본 가맹 계약 기간은 보통 최소 10년이며, IHGAP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갱신할 수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IHGAP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제약이나 동의 없이 가맹계약 또는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권리나 의무를 여하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 경개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양도, 경개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이나 기타 법적 승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양도, 경개 또는 이전과 동시에 가맹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의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경과함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다른 상표로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통지일로부터 가맹본부가 지정한 다른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조항 및 상표의 표시는 지정된 다른 상표에 적용됩니다. 상표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경과되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준수합니다:

해지시, 가맹점사업자는:

- **a.** 해지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모든 미지급 기술서비스수수료(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불문함)를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 **b.** 이행기가 도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기타 금액을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 **c.** 이후에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연관된 개인이나 법인이, 또는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중도 해지된 후 호텔에서나 호텔과 관련하여, 본건 브랜드 시스템의 어느 일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d.** 호텔의 지위 변경과 관련하여 대중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스틸 구조물 하단부에 설치된 주요 독립형 간판을 철거하는 것을 비롯하여 본건 브랜드를 포함하는 모든 표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 **e.**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지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f.**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신이 가맹본부와 관련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본건 브랜드로 호텔을 홍보 또는 대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며, 호텔이 여하한 방식으로 IHG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그 계열사가 부담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특정 이행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해당 구제수단은 가맹계약 또는 기타 법률이나 형평법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제공되는 기타 구제수단에 부가적인 것으로 해당 구제수단을 대체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voco™ 가맹점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HGAP은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voco™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가맹계약에 정의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호텔 또는 시스템의 어떠한 일부도 경쟁 사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홍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의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객실 기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고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가 호텔의 위치 및 제공 서비스를 고려하였을 때 요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i) 호텔의 가격 부풀리기를 금지하는 경우, (ii) 귀사로 하여금 당사의 요금할인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iii) 귀사로 하여금 당사의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들에게 할인요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iv) 당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귀사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및 (v) 특정 종류의 추가요금, 시설이용료, 리조트 이용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요금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사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귀사의 자체 가격 및 요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IHGAP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IHGAP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조건 하에서 승인된 장소에서만 voco™ 호텔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된 상표와 본건 시스템을 사용할 제한된, 비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IHGAP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산업의 영업표지	
수요층, 제품/서비스의 종류, 영업형태 및 방식에 비추어 다른 호텔들과 구분되는 Upscale 체인 호텔로 운영되는 모든 호텔**	브랜드	자회사/계열회사
	voco™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IHGAP은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호텔 로비의 중앙으로부터 200 m 반경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재조정(변경) 사유 및 절차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없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타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온라인, 홈쇼핑 또는 텔레마케팅 등의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잠재적으로 대체하거나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기간

가맹계약의 기간은 효력발생일에 개시하여 호텔 개업일의 10년차 도래일(또는 그 이후)에 종료합니다.

2) 가맹계약의 갱신 불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계약 최초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맹계약의 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10년이므로,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본부는 최초 기간 만료 180일전부터 90일 전까지 가맹계약을 갱신할 계획이 없음을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함으로써, 최초 기간 만료 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을 근거로 가맹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수수료, 비용 또는 기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b.**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수락한 가맹계약 조건 또는 사업정책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또는
- **c.** 가맹점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가맹점 운영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중요한 사업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i)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사업 부지 및 시설의 조달,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라이센스 또는 인허가 취득에 관한 사항;

(ii)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제조공정 또는 서비스 기술 준수에 관한 사항; 또는
(iii) 다음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통상적인 조건에서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
(a) 가맹본부 사업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b)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IHGAP이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과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1.2(b) (i)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1.2(b) (ii)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1.2(b) (ii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거나 적용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a)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b)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또는 (c)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1.2(b) (iv)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2(b) (v)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1.2(b) (v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1.2(b) (vii)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1.2(b) (viii)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1.2(b) (ix)

IHGAP이 서면 통지에 의하여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만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2(a) (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10조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소유 또는 소유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11.2(a) (i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브랜드 시스템, IHG 시스템 또는 해당 시스템의 일부를 라이선스할 권리 또는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비스표 또는 상표의 유효성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툼을 진행하는 경우	11.2(a) (iii)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 표준 및/또는 본 계약의 모든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여 브랜드 호텔을 계속 운영하지 못한 경우	11.2(a) (iv)
가맹점사업자가 허위 장부 또는 기록을 보유하거나 가맹본부에 허위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11.2(a) (v)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대리인에 의한 호텔의 최근 품질 평가 (Quality Evaluation) 검사에서 전반적인 "FAIL"결과를 얻었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날짜까지 품질 평가 결함 요약서에 정리된 결함들을 수정하지 않아, 다시 가맹점사업자가 후속 품질 평가에서도 "FAIL"결과를 받은 경우	11.2(a) (vi)
가맹계약 1.1 (f), 3.9 (g), 3.9 (h), 15.2 또는 15.3을 위반한 경우	11.2(a) (vi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10조에 따라 호텔을 재개장하지 못한 경우	11.2(a) (viii)
가맹점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호텔의 손님에 대한 안전,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러한 위반이 호텔, 브랜드, 브랜드 시스템 또는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11.2(a) (ix)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대표자에 의해 서면으로 합의되고 서명된 경우를 제외하면, 가맹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voco™ 가맹호텔 운영권의 환매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voco™ 가맹호텔 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voco™ 가맹호텔을 운영할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제15.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a.**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가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기술과 재무능력을 신뢰하여 가맹점을 허여함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 **b.** 가맹점사업자가 호텔의 지분 또는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매도하거나 양도하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이를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양도에 관한 모든 상세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i) 해당 양수희망자의 신원; (ii) 호텔운영 기술 및 전문지식에 관한 상세내용; (iii) 해당 양수희망자의 재무상태; 및 (iv)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양도 관련 추가 정보.
- **c.** 매수인, 임차인 또는 소유권승계인이 (가맹본부의 승인을 전제로) 서면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사업자는 호텔 또는 호텔사업을 제3자에 매도, 임대 또는 달리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동의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해당 양도 또는 매도일에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i)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ii) 해당 양수희망자는:
    - (a)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가맹신청서 또는 기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b)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실사 정보(조직도, 주주 및 이사에 관한 상세내용, 재무제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 (c) 가맹계약에 따른 조건과 적어도 동일한 조건의 보장을 가맹본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 (d) 호텔의 새로운 업무 일정 범위에서 가맹본부가 결정하는 업무의 범위 및 프로그램에 동의해야 합니다.

(e) 호텔의 법적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f)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g) 가맹본부의 경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h) 합리적 수준의 명성을 보유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하며,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태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재무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i)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의 전문적인 명성 또는 IHG 브랜드 이미지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개인이나 그러한 개인과 관련된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j)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정부기관 또는 법적 당국에 의해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사에 사업 거래가 금지된 개인 또는 실체로 확인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k) 사기, 절도 또는 유사 불법행위 등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해당 양수희망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직·간접 주주, 이사 또는 임원이 이러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l) 가맹계약 제15.2(d)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d.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제15.2조에 따른 양도, 매도 또는 임대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거나 해당 동의에 특정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수수료, 호텔 업그레이드, 신용, 운영능력, 가맹본부와의 이전 사업거래(있는 경우), 시장가능성 및 IHG 시스템 이용을 위한 새로운 서브라이선스 부여 시 가맹본부가 관련 있다고 간주하거나 적용하는 기타 요인들에 관한 통상적인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고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나 해당 양수희망자(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i) 상호 동의에 따라 가맹계약의 해지 시 효력을 발생하는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당시 표준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IHG 시스템 이용을 위한 새로운 서브라이선스 교부 시 가맹본부가 적용하는 당시 표준 조건(계약기간 제외)을 포함하거나;

(ii) 가맹점사업자 및 해당 양수희망자(가맹본부가 (그 재량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보증인도 포함)는 호텔 매각(또는 임대나 양도) 완료 시점까지 가맹본부가 만족할 만한 형식으로 경개 및 양도 증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양수희망자는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가맹본부가 (그 재량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보증인도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인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호텔의 예정 매도(또는 임대나 기타 양도)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계약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e. 가맹점사업자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의 목적상 이는 양도로 간주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지배권 변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제15.2(a)조 및 제15.2(b)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본부의 승인이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는 호텔 또는 브랜드 시스템의 어떠한 부분도 경쟁 사업 또는 기타 숙박시설이나 브랜드(해당 사업이나 브랜드가 가맹점사업자의 소유라 할지라도)의 홍보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서는 아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가맹본부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호텔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점사업자는:

- **a.** 품질평가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며;
- **b.** 가맹본부 대리인들이 언제라도 청결, 상태 및 브랜드 표준에 대한 준수 사항 확인을 위해 호텔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사 완료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중 숙박 및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시정 기한까지 미비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품질평가 또는 요구되는 후속 품질평가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당시 표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 **c.** 수시로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한 가맹본부의 표준 및 요건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객 만족도 추적 시스템(현재 "게스트 하트비트(Gest Heartbeat)")에 참여해야 하고;
- **d.**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들이 사전 통지를 통해 언제라도 호텔에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방문 비용(숙박비, 식대 및 교통비 포함)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IHGAP의 호텔 실적관리팀의 구성원이 호텔의 실적을 분석하고 IHG 프로그램 및 시스템 활용 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방문도 포함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수시로 IHG가 지정)는 시스템 자금 출자금(System Fund Contributions)**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하여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가맹본부 및/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수시로 IHG가 지정)가 결정하는 비율 및 방식에 따라 IHG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는 호텔들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a.**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에 따라 발생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시스템 자금 출자금을 가맹본부(또는 지정된 계열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 자금 출자금은 현지 통화로 계산하여 일반 현물환율로 미국 달러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b.** 또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수시로 IHG가 지정)는 단독 재량에 따라 3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마케팅 및 예약 출자금(Marketing and Reservation Contribution)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액은 총객실수익의 0.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해당 인상은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인상하는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계열사들은 인상 만료일로부터 24개월간 임의로 이를 재인상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자금 출자금**"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사들이 일반 요금으로 제공하는 브랜드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평가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기간 중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의 시스템 출자금을 IHG 시스템 아래의 호텔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마케팅 및 예약 출자금**은 해당 월 총객실수익의 3%가 됩니다.

(ii) **프리퀀시 마케팅 출자금(Frequency Marketing Contribution)**– 현재, 시스템 프리퀀시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 프리퀀시 점수(또는 항공사 프리퀀시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리퀀시 마일리지)가 부여되어야 하는 호텔 1박당 풀 폴리오(Full Folio)의 4.55%입니다. ("풀폴리오(Full Folio)"라 함은 개인 고객의 객실 예약과 관련된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고객이 지불하는 고객 계정과 연결된 추가 객실 및 해당 객실 예약과 관련된 기타 요금(예: 객실 영화, 세탁, 식음료)은 포함되나 팁 및 컨퍼런스나 연회장 예약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여하한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 및 판촉 활동

현지·지역 마케팅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은 브랜드 표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가맹점사업자 비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양식, 마케팅 및 영업 전략 및 콘텐츠에 관한 가맹본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전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주문 또는 공급한 선택적 홍보물에 대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각 당사자는 당사자의 현재 또는 예정된 상품, 서비스, 마케팅 및 가격 전략, 고객, 금융 또는 계약 관련 준비(가맹계약 조건 포함), 업무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해당 당사자에게 상업적으로 민감하며 비밀("비밀정보")임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 제7조에 명시된 전유적 정보는 가맹본부의 비밀정보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그 직원 및 대리인이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여하한 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당사자의 전문 자문가에게 비밀로 공개하는 경우;
(ii) 가맹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적절하게 요구되는 경우;
(iii)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다만, 해당 동의의 조건에 따라야 함);
(iv) 법률, 규칙, 규정, 관할법원의 요건 또는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또는
(v) 당사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정보의 여하한 부분이 공유저작물에 속하게 된 정보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합리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각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 중인 비밀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IHGAP는 가맹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HGAP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의 가치 또는 명성의 손실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 또는 명성의 손실이 법적 요구 사항의 위반(정보보호법 제외) 또는 한국의 사회 상규 위배에 관한 IHGAP 또는 그 이사, 임원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 IHGAP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호텔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에 관하여 발생한 중대한 실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가치 또는 명성의 손실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IHGAP이 지급받은 가맹 수수료의 최대 값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아래 소요기간에 명시된 정보는 추정된 기간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가맹사업 개업과 관련한 비용 및 소요 시간은 각 voco™ 가맹호텔에 따라 현저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총		~ 4 년	
가맹희망자의 최초 문의	가맹점사업자가 제안한 희망 장소 확인, 담당자 배정	문의부터 건축 계획 승인까지 10 에서 36 개월 (계획의 개발 상황과 제출 시기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에 따라 수수료는 다양함 가맹본부에게는 이 단계에서 지급할 금액 없음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 근접한 10 개의 voco™ 호텔 정보 제공 가맹본부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 위한 가맹희망자 상담	문의부터 건축 계획 승인까지 10 에서 36 개월	
시장 타당성 조사/상담	가맹신청서 처리 의향서 서명 근처 영업점에 대한 정보 제공	문의부터 건축 계획 승인까지 10 에서 36 개월	
최종 협의	가맹본부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 계약서 제공	문의부터 건축 계획 승인까지 10 에서 36 개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에 따라 수수료는 다양함 가맹본부에게는 이 단계에서 지급할 금액 없음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등록된 한국의 가맹 사업 정보공개서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검토를 위하여 제공됨	문의부터 건축 계획 승인까지 10 에서 36 개월	
가맹계약 체결	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수령하고 7 일 후,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14 일 후	
신청 수수료 지급	가맹본부에게 가맹 수수료 지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 후 또는 호텔의 영업 개시 후 중 이른 쪽	
디자인 검토 계약 체결	호텔의 디자인과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의 검토와 승인, 시스템 기준에 맞는 공사 도면의 검토 기간 동안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검토와 기술 지원	문의부터 건축 계획 승인까지 10 에서 36 개월	디자인 검토 수수료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 개시	디자인과 건축 일정에 대한 협의 및 확인	문의부터 건축 계획 승인까지 10 에서 36 개월	
인테리어 작업	건축 개시		
검사	건축이 완료되면 호텔이 개업할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호텔 방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 규정, 매뉴얼, 표준 운영 절차와 기타 절차, 시스템, 시스템 기준 준수 가이드를 지키는 경우		
오프닝 전 교육 및 오프닝 전 승인 절차	총지배인과 호텔 직원에 대한 초기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 판매와 마케팅, 예약, 매출 관리, 식음료, 객실 운영, 최종 사용자 시스템 훈련, 경영자 훈련 호텔이 시스템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검토		
호텔 개업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개업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IHGAP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1) 가맹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 다툼 또는 청구의 경우, 우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해당 분쟁, 다툼 또는 청구를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논의해야 합니다.

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교부한 분쟁해결을 구하는 통지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쟁, 다툼 또는 청구는 당시 유효한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SIAC”) 중재규칙(이에 언급함으로써 본 조에 포함됨)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중재판정부는 1 인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상호 합의에 따라 지명되며, 30 일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SIAC 회장에 의해 지명됩니다. 중재지는 싱가포르 SIAC 이며 중재 공식 언어는 영어가 됩니다. 판정 시, 중재인은 가맹계약 조건에 따라 구속됩니다. 중재인의 결정 및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으며,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또는 여하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중재 절차의 준거법은 싱가포르 법률입니다.

   가맹계약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여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합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일방 당사자에 부여한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라도 (가맹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이는 가맹계약 제 14.2(b)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습니다.

3) 제 14.2(a)조 또는 제 14.2(b)조는 가맹본부가 관련 국가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기타 임시적 구제수단(가맹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기간 중 브랜드 마크 및/또는 IHG 시스템 마크의 미승인 사용 금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voco™ 비즈니스 또는 제품/서비스를 나타내는 상표, 상호 또는 서비스표를 나타하는 구조물)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voco™ 호텔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불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IHGAP 는 앞선 제 IV 조 2 항 1 목에서 정하는 마케팅 & 예약 출자금을 마케팅, 예약 또는 관련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신의성실에 따른 사업적 판단에 근거하여 회사 전체의 홍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비율 및 방식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 지원금 및/또는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가맹본부는 voco™ 가맹점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 안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떠한 신용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HGAP는 귀사의 직원 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호텔에서 또는 원격으로 특정 호텔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아래 2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가맹 호텔 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시스템 관련 교육 제외)(필수 또는 선택적)은 자율 진행되며, 당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교육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유일한 비용은 연간 미화 6,000달러의 교육 플랫폼 구독 수수료입니다.

2. 선정된 호텔 리더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면 교육이 제공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IHGAP 직원의 교통 비용을 지불하고 호텔에서 전체 보딩(boarding)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최소시간	비고	미용	기한
IHG 환영	IHG의 과거, 현재와 미래	집단강의	1일	필수	-	-
부서별 트레이너 프로그램	각 부서의 고급 팀 구성원이 직무 교육을 지원	집단강의	1일	필수	-	-
L&L에 대한 브랜드 교육을 포함한 럭셔리 펀더멘털	브랜드 오리엔테이션 및 브랜드 서비스 교육	집단강의	1일	필수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위의 섹션 VIII항 1을 참조하십시오.

3. 교육・훈련의 주체

위의 VIII 항 1을 참고하십시오.

4. 교육・훈련 요구 사항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본건 호텔은 항상 브랜드 표준에 명시된 가맹본부의 의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당사는 국내외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 1>

대차대조표 (단위: 싱가폴 달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싱가폴 달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amea.development@ihg.com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